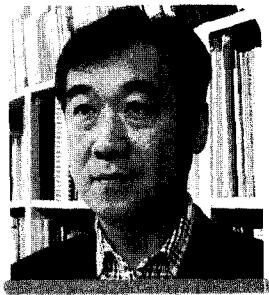


## 자신의 건강을 위해 근로자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답을 찾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경영정책연구실  
이 경 용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근로자 건강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사업주와 고용관계에 놓여 있는 근로자는 산업현장에서 사업주의 통제를 받으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사업주의 합리적 활동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은 국가 노동력의 손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보존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사업주를 규제함으로써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의 규제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의지나 동기가 없을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

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사회문제이든 법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 것도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하며, 법이 규정하지 못한 사항들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 간의 타협과 합의 등의 노력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자가 작업 현장의 많은 위험요인으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아니면 보건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노동조합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야 하는가? 근로자가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조직이나 사람이 있는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을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근로자는 산재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법에 규정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이외에 근로자의 권리나 적극적인 대처 행동이 언급된 사항은 제26조의 작업중지 등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 의하면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외에 근로자 개인이 적극적인 안전보건 관련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이를 지원하거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한 규정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근로자 개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 대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주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근로자 권리에 관한 조항을 적극적으로 포함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은 생산 현장에서 시작해서 생산 현장에서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 생산 현장의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안전보건 문제의 당사자인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가 마련된다면 근로자 건강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 유지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바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근로자 개개인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며, 산업현장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는 근로자를 위해 사업주와 관리감독자 그리고 보건관리자가 이들의 활동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생산 활동은 항상 위험을 전제로 한 것이다. 위험이 있다고 해서 사업주가 생산 활동을 포기할 수 있을까? 또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알고 있는 근로자는 위험을 회피하고 결과적으로 임금을 포기할 수 있을까? 사업주의 생산 활동과 근로자의 노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을 예측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보건 문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위험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항상 감시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동안 사업장의 안전보건문제는 사업주와 관리감독자 그리고 보건관리자의 업무라고 생각해왔다면 이제부터는 현장의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활동의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보건관리자가 생산 현장에 있는 근로자처럼 사업장의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단지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며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모의 역할에 불과하다.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산업현장은 사업주의 통제권이 직접 행사되는 곳이다. 사업주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노동력도 역시 최대한 활용 하려 하며,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위험에 노출되고 건강을 해치게 된다. 모든 근로자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는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작업중지를 요청할 만큼 위급하거나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근로자들은 덜 쾌적한 환경이나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을 감내하고 일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할 때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아쉬운 실정이다.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이러한 지원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앞으로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정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자율안전보건 관리의 시작은 근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이 일하는 현장의 위험요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모르는 사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답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격려하고 고무시켜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법에 의해 관리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안전문제와 법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들을 근로자 스스로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